

약관(일부)변경 내역

1. 투자신탁명칭

- 프라임장기주택마련주식투자신탁

2. 약관개요

투자신탁명칭	설정일	설정잔고(2005.12.23)	수익자수
프라임장기주택마련주식투자신탁	2005.11.11	27 억	

3. 약관변경사유

- 동 상품은 장기주택마련상품으로서 장기투자를 통해 금리이상의 수익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바 주식시장의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주식편입한도 조정

4. 약관변경내용

해당조문	현 행	변 경(안)
펀드명	프라임장기주택마련주식투자신탁	프라임장기주택마련주식혼합투자신탁
제 1 조(목적등)	<p>②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87 조,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81 조 및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해 수익자의 재산형성과 주택자금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“주식 등”에 투자하는 주식형투자신탁으로서 수익자는 “주식 등”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, 다양한 경제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.</p>	<p>②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87 조,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81 조 및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해 수익자의 재산형성과 주택자금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“주식 및 채권 등”에 투자하는 혼합형 투자신탁으로서 수익자는 “주식 및 채권 등”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, 다양한 경제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.</p>
제 36 조(투자대상등)	<p>①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생략 2. 증권거래법 제 2 조제 1 항제 1 호 내지 제 4 호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, 사채권(신용평가등급이 BBB-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는 제외한다)(이하 “채권”이라 한다) 3. 생략 4. 법시행령 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 · 매출 또는 종개한 어음 · 채무증서 또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 2 조의 3 제 4 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으로서 신용등급이 A3- 이상인 것(이하 “어음”이라 한다) 	<p>①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생략 2. 증권거래법 제 2 조제 1 항제 1 호 내지 제 4 호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, 사채권(신용평가등급이 A-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는 제외한다)(이하 “채권”이라 한다) 3. 생략 4. 법시행령 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 · 매출 또는 종개한 어음 · 채무증서 또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 2 조의 3 제 4 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으로서 신용등급이 A2- 이상인 것(이하 “어음”이라 한다)
제 37 조(투자한도)	<p>①자산운용회사는 제 36 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 · 운용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% 이상으로 한다. 2.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% 이하로 한다. 	<p>①자산운용회사는 제 36 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 · 운용한다. 다만, 다음 제 1 호 및 제 2 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% 이상으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 이상 90% 이하로 한다. 2.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% 이하로 한다.

해당조문	현 행	변 경(안)
제 40 조(투자신탁보수)	<p>③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. 자산운용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<u>7.5</u> 2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<u>17.5</u> 3. 수탁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<u>0.3</u></p>	<p>③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. 자산운용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<u>4.5</u> 2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<u>10.5</u> 3. 수탁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<u>0.3</u></p>

부 칙

제 1 조(시행일) 이 약관의 변경은 2005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약관(일부)변경 내역

1. 투자신탁명칭

- 신영비과세고배당주식투자신탁 제 1 호

2. 약관개요

투자신탁명칭	설정일	설정잔고(2006.1.2)	수익자수
신영비과세고배당주식투자신탁 제 1 호	2003.5.27	1437 억	

3. 약관변경사유

- 2006년 1월 1일 가입고객부터 배당 및 이자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혜택

미적용

	변경전	변경후
펀드명 칭	신영비과세고배당주식투자신탁 제 1 호	신영밸류고배당주식투자신탁
제 8 조(신 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권의 총좌수)	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은 금()원으로 하고 설정할 수 있는 수익권의 총좌수는 3000 억좌로 한다.	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은 금()원으로 하고 설정할 수 있는 <u>수익권의 총좌수는 10 조좌로 한다.</u>
제 36 조 (투자대 상등)	① 생략 1. 증권거래법 제 2 조제 1 항제 5 호 및 제 6 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및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(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것에 한한다)(이하 “주식”이라 한다)	①좌동 1. 증권거래법 제 2 조제 1 항제 5 호 및 제 6 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및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(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것에 한한다)(이하 “주식”이라 한다) <u> 및 다음 각호의 유가증권 가. 제 1 호에서 정의된 주식 중 당해회계년도 결산배당금기준 배당수익률이 거래소시장 및 코스닥시장 평균 배당수익률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 (이하 “고배당주”라 한다)</u>
제 37 조 (투자한 도)	제 37 조(투자한도) ①자산운용회사는 제 36 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 운용한다. 다만, 보유 주식등의 평가액(증가를 기준으로 한다)을 신탁재산의 총평가액으로 나눈 비율이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연간 평균하여 60% 이상이어야 하며,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 87 조의 4 제 2 항에	제 37 조(투자한도) ①자산운용회사는 제 36 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 운용한다. <u>(삭제)</u>

<p><u>따라 투자원금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및 최초설정일로부터 2월간은 이 비율을 충족하는 것(60%이상인 경우 그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)으로 본다.</u></p> <p>1.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% 이상으로 한다.</p>	<p>1.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% 이상으로 한다. <u>다만, 고배당주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% 초과로 한다.</u></p>
---	--

부 칙

제 1조(시행일) 이 약관의 변경은 200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.